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이윤희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1646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 안 자 : 이윤희 의원의 17명
- 나. 제 안 일 : 2017. 2. 10.
- 다. 회 부 일 : 2017. 2.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의 활성화와 공익성 강화를 위해 영업장소 지정 범위와 영업허가과정에서 우대조치 대상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전통시장과 상권활성화 구역, 공영주차장 및 일반광장 등으로 확대함(안 제2조 제1항)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할 때 우선할 수 있는 대상을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자립지원기관 등으로 확대함(안 제5조 제1항)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위생관리 표준메뉴얼 보급을 추가하고 국가, 자치구,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 다. 기타사항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통칭 푸드트럭으로 불리우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수익계약 우선대상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및 공익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음.

2 주요사항 검토

□ 영업장소(안 제2조제1항)

- 안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영업가능 장소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로 정하고 있던 것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까지 확대한 것으로,
 - 동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서울메트로 등 6개 투자기관¹⁾과 서울의료원 등 15개 출자·출연기관²⁾의 행사까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이 가능하게 되며,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차원에서 집행부도 동의한 사안임.
- 안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영업장소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을 신설하였는데,
 - 해당 구역의 경우 최근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 등에 타격이 큰 전통시장의 상인회 등 현 상권과의 갈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2조제1항제5호와 제6호에서는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과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등의 광장과 공영주차장은 현행 조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에 해당하여 입법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1) 투자기관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공사, 농수산물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총 6개)

2) 출자·출연기관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관광마케팅(주)(총 15개)

□ 우선 영업 자격(안 제5조)

- 안 제5조제1항 각 호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시설사용 수의계약에 있어 취업애로 청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외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까지 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를 아우르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³⁾, 제13조제5항⁴⁾ 및 제14조제5항⁵⁾에 의거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푸드트럭 영업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 수의계약 운영요령(2016. 8. 9)」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아래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및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 및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규제를 개혁하여 소자본 창업 기회를 넓히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 푸드트럭 영업 합법화의 본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는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조례 제정 취지는 취업애로자 등 개인의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고,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은 설립목적과 달리 이익의 사익화 우려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영업에 대한 지원 등(안 제10조, 안 제11조)

- 안 제10조제1항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활성화를 위해 현 조례 상의 “창업자금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 이상의 사람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용자, 창업·운영 교육” 외에 “위생관리에 관한 표준 매뉴얼 보급”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 푸드트럭 영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위생관리 매뉴얼 보급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2016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절차·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자치구로 1,500부 가량을 배포한 바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음.
- 또한 안 제10조제4항은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자치구,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푸드트럭 사업 발전을 위해 민관의 소통과 정보공유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임.
- 안 제11조는 조례안 외의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안 제10조제1항의 “위생관리에 관한 표준 매뉴얼 보급”은 조례보다는 시행규칙에 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